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- 85호

「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##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목적, 기능(안 제1조 ~ 제2조)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(안 제3조)
-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임기(안 제4조 ~ 제5조)
- 회의, 간사(안 제6조 ~ 제7조)
- 위원의 위촉 해제(안 제8조)
- 수당, 운영세칙(안 제9조 ~ 제10조)

### 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10. 12. ~ 2017. 10. 16. (5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pjw1028@korea.kr](mailto:pjw1028@korea.kr)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#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조정한다.

1.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,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순천시의회 의원
4. 관계 공무원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.